

의안번호	
의 퇴 인	정혜경 의원
회 답 일	2025. 11. 28.
추계번호	25A5276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결과

- (일부추계) 개정안에 따라 시·도지사가 5년마다 신·재생에너지의 기술 개발 및 이용·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지역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등의 추가재정소요는 2027년에 17억원 등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 동안 총 17억원(연평균 3억 4,000만원) 이상으로 추계됨
- 개정안의 다른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는 추계가 곤란하여 일부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만 추계한 것으로, 개정안의 전체적인 재정소요액은 추계된 금액을 상회할 것임

[표 1]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7~2031년

(단위: 백만원)

	2027	2028	2029	2030	2031	합계	평균
지역 기본계획 및 지역 연차별 실행계획(안 제6조의2)	1,700	—	—	—	—	1,700	340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I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 현행 “신·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에 다음을 추가함(제2항) － 3의2. 재생에너지 총발전량 중 국·공영시설의 발전량이 차지하는 비율의 목표	의무규정
2	안 제6조의2(지역 기본계획 및 지역 연차별 실행계획)	○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은 제5조제1항의 기본계획을 실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함(제1항)	의무규정
3	안 제10조(조성된 사업비의 사용)	○ 법 제9조에 따라 조성된 사업비의 용도에 다음을 추가함 － 3. 재생에너지 공영화	의무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4	안 제11조의2(재생에너지 발전의 공공 운영)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기관이 재생에너지 사업 공영화를 추진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음(제2항) - 1. 시·군 - 2. 도 및 시·군이 단독 또는 공동으로 설립한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단 - 3. 도 및 시·군이 단독 또는 공동으로 설립한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출연 기관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시·군이 단독 또는 공동으로 재생에너지 사업을 위하여 제2항제2호 및 제3호의 기관을 새롭게 설립하려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음(제3항)	재량규정
5	안 제12조의2(자연력 활용 부담금)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연력을 활용한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에 대하여 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음(제1항) ○ 제1항의 부담금은 재생에너지 판매대금의 10퍼센트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함(제2항)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부담금을 지역 기후대응기금에 적립하고,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하여야 함(제3항) - 1. 지역재생에너지 자립에 필요한 사업 - 2. 지역재생에너지 복지 관련 사업 - 3.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정의로운 전환 사업 지원	재량규정의무규정
6	안 제12조의3(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의 공영화)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5조제2항제3의2호의 재생에너지 공영화 목표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특허기간이 만료된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수용하여 제11조의2제1항 각 호의 기관으로 하여금 운영하게 할 수 있음(제1항) ○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가 특허 조건을 위반한 경우 또는 재생에너지 발전 여건이 현저히 변화되어 특허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다만, 이 경우에는 특허 유지의 필요성이 있는지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명절차를 거쳐야 함(제2항)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재량규정의무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공영화할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상을 하여야 함(제3항)	
7	안 제12조의4(정의로운 전환 이행 의무)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석탄화력발전소 또는 원자력발전소 등 신·재생에너지 이외의 발전사업의 종료 또는 감축으로 이에 종사하는 노동자(「근로기준법」 제2조의 근로자 및 외형에 관계없이 노무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의 노무제공관계가 종료될 경우 공공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우선 고용하여야 함. 이에 필요한 구체적인 기준, 대상,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제1항) ○ 제1항에 따라 노무제공관계가 전환되는 노동자의 노동조건은 종전의 노무제공관계의 수준보다 낮아져서는 아니됨(제2항) ○ 노무제공관계의 전환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재취업을 위한 교육, 생활보조금 지급, 생활근거지 이전에 따른 비용 보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책을 이행하여야 함(제3항)	의무규정

Ⅲ.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

1.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비고(추계 미 실시 사유)
1	안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X	○ 현행 신·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기본계획에 “재생에너지 총발전량 중 국·공영시설의 발전량이 차지하는 비율의 목표”를 추가하는 것은 현행 사업비 범위 내에서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추계 대상에서 제외함 － 현재 신·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기본계획(제6차) 수립은 한국에너지공단이 수행하고 있으며 관련 비용은 1억원 규모임
2	안 제6조의2(지역 기본계획 및 지역 연차별 실행계획)	○	—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비고(추계 미실시 사유)
3	안 제10조(조성된 사업비의 사용)	X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함
4	안 제11조의2(재생에너지 발전의 공공 운영)	X	
5	안 제12조의2(자연력 활용 부담금)	X	
6	안 제12조의3(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의 공영화)	X	
7	안 제12조의4(정의로운 전환 이행 의무)	X	

2.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

□ 개정안의 “재생에너지 공영화”와 관련하여 현행 국·공유시설 재생에너지 통계는 매우 제한적이어서 현시점에서 향후 구체적인 재생에너지 중장기확대목표 등을 합리적으로 추정하는데 한계가 있어 추계가 가능한 일부에 대해서만 추계함

- 참고로, 최근 「2023년 신·재생에너지 보급통계」(2024.12.)에 따르면, 국·공유시설 관련 통계는 “재생에너지 원별 용도별 보급용량”에 한해 일부 공개되고 있음
 - － 동 자료에 따르면, 태양광의 경우 2023년 누적 보급용량은 총 28,033,336kW이며 이 중 “발전사업용”이 24,186,093kW으로 86.3%를 차지하며, “가정용” 2,246,407kW(8.0%), “공공시설” 580,830kW(2.1%) 등임¹⁾

1) 이때 “공공시설”은 개정안의 “국·공유시설”과 정의 및 구체적인 범위가 다를 수 있음

[표 2] 재생에너지 원별 용도별 보급용량(2023년 기준)

(단위: 해당 단위)

	태양광(kW)	태양열(m ²)	지열(kW)
2023년 용도별 누적 보급용량	28,033,336	680,279	1,687,322
가정용	2,246,407	314,565	312,526
공공시설	580,830	94,376	727,768
교육시설	283,520	28,462	229,544
사회복지시설	74,849	125,722	72,449
산업시설	153,911	34,175	29,152
상업시설	242,488	36,474	30,303
발전사업용	24,186,093	—	—
기타	265,238	46,504	285,579

주: 재생에너지 중 일부만 표시

자료: 한국에너지공단, 「2023년 신·재생에너지 보급통계」, 2024.12.

-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는 개정안의 부칙 등을 고려하여 추계기간은 2027년부터 2031년까지로 함

3.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

- 안 제6조의2제1항에 따라 시·도지사가 신·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실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면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
 - 이때 비용추계 대상은 “지역 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연구용역비”로 하며, 5년마다 수립하므로 2027년에만 비용이 발생하는 것으로 가정함
 - 유사 연구용역의 사례를 참고할 때 17억원(17개 시·도×1억원)의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
 - － 유사 연구용역 사례로는 “제주특별자치도 제7차 지역에너지계획 수립 연구용역”(제주특별자치도, 2025년, 1억원), “강원특별자치도 제6차 지역에너지계획 수립 용역”(강원특별자치도, 2025년, 9,000만원), “세종특별자치시 제3차 지역에너지계획 수립 용역”(세종특별자치시, 2025년, 1억 600만원) 등

[표 3]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7~2031년

(단위: 백만원)

	2027	2028	2029	2030	2031	합 계	연평균
지역 기본계획 및 지역 연차별 실행계획(안 제6 조의2)	1,700	—	—	—	—	1,700	340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IV. 부대의견

- 본 비용추계서의 추가재정소요액은 유사 사례를 준용하여 추계한 결과로, 향후 실제 추가재정소요액은 달라질 수 있음
- 개정안의 다른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는 추계가 곤란하여 일부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만 추계한 것으로, 개정안의 전체적인 재정소요액은 추계된 금액을 상회할 수 있음

V.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추계세제총괄과	윤주철	권아영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윤주철	02-6788-4655	yjc@nabo.go.kr